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A survey of the working scope understanding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chair-side dental  
assistants among dental students in Seoul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치의대학원

치 의 학 과

김 경 준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A survey of the working scope understanding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chair-side dental  
assistants among dental students in Seoul

지도교수 진 보 형

이 논문을 치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김 경 준

김경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이 삼 선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진 보 형 \_\_\_\_\_ (인)

위 원 \_\_\_\_\_ 조 현 재 \_\_\_\_\_ (인)

# 국문초록

## 1. 목적

치과의사는 구강진료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각자 수행하는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환자나 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따른 정확한 진료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올바른 진료를 지시한다면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 높은 정확한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확한 법정 진료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의 역할 수행 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2. 방법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치의학과 학생 9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연구 취지를 듣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답변이 완료된 설문지 회수 후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461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 및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관

련 교육내용 유무 등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내용은 전산 입력 후 SPSS 통계 패키지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 3. 결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의료인 등의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시행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적었다. 또한, 이 내용을 습득한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일반·전문 언론매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는 치과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 업무의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고, 간호조무사 업무 가능 행위 중 임시부착물 접착용 시멘트 혼합, 치아본뜨기 트레이 시적, 인상재료 혼합 준비,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와 제거, 교정용 결찰용 호선 제작, 구강 내 필름 고정시키기, 방사선 사진(아날로그, 디지털) 출력과 저장 관련 업무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체 조사 내용의 인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관련 교육과정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교수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3, 4학년(원내 임상실습과정) 때 개설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주요어** :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학 번** : 2014-23007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목적 .....	3
2. 연구 대상 및 방법 .....	4
2.1 연구 대상 .....	4
2.2 연구 방법 .....	4
2.3 통계 분석 .....	4
3. 연구 성적 .....	5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
3.2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 인지도 .....	5
3.3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 .....	8
3.4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	11
4. 고안 .....	13
5. 결론 .....	17
참고문헌 .....	19
행위 분류표 .....	22
설문지 .....	23
Abstract .....	27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
[표 2]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인지도 .....	7
[표 3]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 .....	9
[표 4] 행위 분류표 정답률 .....	9
[표 5]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가능 여부 .....	10
[표 6]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	11
[표 7]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상세) .....	12

# 1. 서 론

## 1.1 연구 배경

설탕 소비량 증가 등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치아우식,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 또한 늘어나고 있다<sup>1)</sup>. 특히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환자 수는 건강보험 적용 전인 2014년 5,824명에서 2017년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팽창했으며<sup>2)</sup>, 최근에는 치아 본래의 저작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 목적의 치열교정과 보철치료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진료인력 간의 원활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원 전 다양한 매체와 전문자료를 통해 내가 받을 진료와 관련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함으로써 치과의사에게 올바른 진료를 받기 위한 합리적인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sup>3)</sup>.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자신이 진단받은 치료계획이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보를 비교분석한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과 관련한 치료 절차 및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치료하는 진료인력이 의료법상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치석 등 침착물 제거)은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보조업무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들의 낮은 사회적 이미지가 초래한 대표적인 예이다<sup>4)</sup>.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치과위생사들은 예방이나 구강보건교육에 힘쓰는 구강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sup>5)</sup>, 이는 치과 의사를 보조하는 조력자 이미지가 강한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들과는 크게 대비된다<sup>6,7)</sup>.

더 큰 문제는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간호조무사들도 서로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 등<sup>8)</sup>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위생사들은 자신들의 근무처에서 주어진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교에서 익힌 치과 위생사의 업무들이 실제 임상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9)</sup>. 한편, 박 등<sup>10)</sup>은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과 위생사들이 예방적 처치와 구강보건교육에 전념하기에는 치과진료실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진료실 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등<sup>11)</sup>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위생사의 법정 업무인 방사선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및 치면열구 전색을 시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최대 90.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외에도 치과기공사, 병원코디네이터에 이르는 수많은 무자격자들이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간 업무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 등<sup>12)</sup>의 연구에 의하면 79.5%에 달하는 응답자가 치과 위생사와 그 외의 진료보조인력 간 업무영역이 불명확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40%가 치과 의사가 치과 위생사의 법정 진료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렇듯 자의든 타의든 치과 의사들은 진료 중 치과 의사의 업무를 치과 위생사에게, 또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하기도 한다. 만약 이 때 치료결과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자가 위임진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치과 위생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sup>13)</sup>.

때문에 치과의사는 치과진료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각자 수행할 수 있는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이와 관련한 의문을 가질 경우에는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에 기초한 직업별 진료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올바른 진료를 지시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만족할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 진료영역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인력 운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기초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확한 진료영역과 교육내용 유무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내용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훗날 치과의사로서 올바른 진료를 지시함으로써 환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연구 대상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치의학과 학생 9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연구 취지를 듣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답변이 완료된 설문지 회수 후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461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IRB No.: S-D20170050).

### 2.2 연구 방법

조사 내용으로는 나이, 성별, 학교, 학년, 출신(치의예과, 학사졸업)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sup>14)</sup> 및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교육내용 유무 등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2.3 통계 분석

응답 내용은 전산 입력 후 SPSS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함께 유효 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 이 요인들과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 및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교육내용 유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교차분석은 0.05 유의수준으로 진행하였고, 일원 분산분석 사후 검정에는 Tukey의 정직 유의차 검정을 사용하였다.

### 3. 연구 성적

####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과 같이,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5.19세였고, 최소 20세부터 최대 40세까지 분포했다. 연령층을 나누어 살펴보면 20대 전반(20-24세)이 212명(46.0%), 20대 후반(25-29세)이 204명(44.3%), 30대 전반(30-34세)이 41명(8.9%), 30대 후반 및 40대 전반(35-40세)이 4명(0.9%)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292명(63.3%), 여자가 168명(36.4%)이었고, 학교는 경희대학교 95명(20.6%), 연세대학교 134명(29.1%), 서울대학교 232명(50.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8명(25.6%), 2학년이 85명(18.4%), 3학년이 168명(36.4%), 4학년이 90명(19.5%)이었고, 출신은 치의예과가 147명(31.9%), 학사졸업이 314명(68.1%)이었다.

#### 3.2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 인지도

표 2와 같이,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2%이었다.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였는데, 알게 된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30.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27.3%), TV, 신문 등 일반 언론매체(26.5%), 의료계 관련 전문 언론매체(1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홍보 부족(42.7%), 관심 없음(31.5%), 법에 대한 인식 부족(24.5%), 기타(1.2%)를 순서대로 꼽았다. 의료인 명찰폐용 의무화법 시행 및 내용 인지도는 학년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잔차 검정 결과, 의무화법 시행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고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나이 (평균 ± SD, 최소 - 최대)			25.19 ± 3.265 (20 - 40)
연령층	20대 전반 (20-24세)		212 (46.0)
	20대 후반 (25-29세)		204 (44.3)
	30대 전반 (30-34세)		41 ( 8.9)
	30대 후반 및 40대 전반 (35-40세)		4 ( 0.9)
성별	남자		292 (63.3)
	여자		168 (36.4)
학교	경희		95 (20.6)
	연세		134 (29.1)
	서울		232 (50.3)
학년	1학년		118 (25.6)
	2학년		85 (18.4)
	3학년		168 (36.4)
	4학년		90 (19.5)
출신	치의예과		147 (31.9)
	학사졸업		314 (68.1)

표 2.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인지도

구분		n (%)		p
		네	아니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시행*		176 (38.2)	285 (61.8)	< 0.05
	1학년	22 (18.6)	<b>96 (81.4)</b>	
	2학년	22 (25.9)	<b>63 (74.1)</b>	
	3학년	<b>79 (47.0)</b>	89 (53.0)	
	4학년	<b>53 (58.9)</b>	37 (41.1)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내용*		131 (28.4)	330 (71.6)	< 0.05
	1학년	15 (12.7)	<b>103 (87.3)</b>	
	2학년	16 (18.8)	<b>69 (81.2)</b>	
	3학년	56 (33.3)	112 (66.7)	
	4학년	<b>44 (48.9)</b>	46 (51.1)	
		n (%)		
인지 경로	TV, 신문 등 일반 언론매체	35 (26.5)		
	의료계 관련 전문 언론매체	21 (15.9)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36 (27.3)		
	의료계 관련 종사자	40 (30.3)		
무지 이유	홍보 부족	141 (42.7)		
	관심 없음	104 (31.5)		
	법에 대한 인식 부족	81 (24.5)		
	기타	4 ( 1.2)		

\* 카이제곱 검정, p=0.05.

### 3.3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

표 3과 같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답한 응답자는 69.2%로, 이를 알게 된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36.6%), 언론 등의 매체(30.0%),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26.5%), 기타(4.7%), 정규 교육과정 외 학회, 세미나 등(2.2%)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름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관심 없음(38.6%), 관련 교육과정의 부재(33.8%), 홍보 부족(20.7%), 진료 현실과 동떨어짐(6.2%), 기타(0.7%)를 순서대로 꼽았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는 학년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특히,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업무 범위를 인지하는 비율은 4학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위 분류표 정답률을 표 4로 정리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해 실제 범정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정답률로 표시하였는데, 전체 정답률은 65.8%이었고, 간호조무사(57.7%)보다 치과위생사(74.3%) 항목에서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관련 교육과정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를 올바르게 답한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표 5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치과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 업무의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치과위생사 업무 가능 행위 중 임시충전,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간호조무사 업무 가능 행위 중 임시부착물 접착용 시멘트 혼합, 치아본뜨기 트레이 시적,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와 제거, 교정용 결찰용 호선 제작, 구강 내 필름 고정시키기, 방사선 사진(아날로그, 디지털) 출력과 저장 관련 업무에서 4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표 3.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인지도

				n (%)
구분		네	아니오	p
업무 범위 상이*		319 (69.2)	142 (30.8)	< 0.05
	1학년	71 (60.2)	<b>47 (39.8)</b>	
	2학년	50 (58.8)	<b>35 (41.2)</b>	
	3학년	122 (72.6)	46 (27.4)	
	4학년	<b>76 (84.4)</b>	14 (15.6)	
				n (%)
인지 경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84 (26.5)		
	정규 교육과정 외 학회, 세미나 등	7 ( 2.2)		
	의료계 관련 종사자	116 (36.6)		
	언론 등의 매체	95 (30.0)		
	기타	15 ( 4.7)		
무지 이유	홍보 부족	30 (20.7)		
	관심 없음	56 (38.6)		
	관련 교육과정의 부재	49 (33.8)		
	진료 현실과 동떨어짐	9 ( 6.2)		
	기타	1 ( 0.7)		

\* 카이제곱 검정, p=0.05.

표 4. 행위 분류표 정답률

항목	문항 수	평균 ± SD	정답률 (%)
치과위생사	30	22.3 ± 7.448	74.3
간호조무사	30	17.3 ± 6.622	57.7
전 체	60	39.5 ± 12.74	65.8



표 5.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가능 여부

시행령 관련 업무	행위 분류	정답자 수 (%) (n=461)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석 등 침착물 제거	1. 장비 소독 및 기구준비	418 (90.7)	360 (78.1)
	2. suction assist	421 (91.3)	203 (44.0)
	3. 치석 등 침착물 제거	397 (86.1)	384 (83.3)
불소 도포	1. 시행 장비 및 재료 준비	410 (88.9)	366 (79.4)
	2. suction assist	421 (91.3)	215 (46.6)
	3. 불소도포	310 (67.2)	365 (79.2)
	4. 불소트레이 제거 및 재료 정리	384 (83.3)	194 (42.1)
임시충진	1. 재료 및 기구준비	404 (87.6)	364 (79.0)
	2. suction assist	408 (88.5)	193 (41.9)
	3. 임시충진	169 (36.7)	402 (87.2)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1. 임시부착물 및 기구 준비	407 (88.3)	360 (78.1)
	2. 접착용 시멘트 혼합 (장착 시)	381 (82.6)	131 (28.4)
	3.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195 (42.3)	397 (86.1)
치아본뜨기	1. 트레이 시적	359 (77.9)	178 (38.6)
	2.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390 (84.6)	216 (46.9)
	3. 치아본뜨기	316 (68.5)	381 (82.6)
	4.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354 (76.8)	120 (26.0)
	5. 트레이 제거	330 (71.6)	101 (21.9)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1. 장비 및 재료 준비	399 (86.6)	362 (78.5)
	2. suction assist	408 (88.5)	197 (42.7)
	3. 결찰용 호선 제작	190 (41.2)	40 ( 8.7)
	4.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176 (38.2)	406 (88.1)
구내방사선촬영 업무	1. 환자 자세 및 설명	397 (86.1)	295 (64.0)
	2. 구강 내 필름 고정시키기	349 (75.7)	148 (32.1)
	3. 구내방사선촬영	259 (56.2)	343 (74.4)
	4. 아날로그 방사선 사진 현상 및 정착	297 (64.4)	123 (26.7)
	5. 디지털 방사선 사진 출력 및 저장	309 (67.0)	149 (32.3)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1. 장비 및 재료 준비	407 (88.3)	374 (81.1)
	2. suction assist	411 (89.2)	199 (43.2)
	3. 치면열구전색 등 시행	187 (40.6)	394 (85.5)

행위 분류는 각 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 행위를 의미함.

### 3.4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표 6과 같이, 94.4%에 이르는 응답자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4.3%가 3, 4학년(원내 임상실습과정) 때 개설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내용에 관하여 표 7에 학교, 학년 별로 정리하였다.

표 6.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n (%)	
구분		네	아니오
교육과정 존재 여부		63 (13.7)	398 (86.3)
교육과정 필요성		435 (94.4)	26 ( 5.6)
개설 시기	1학년 (이론수업 위주의 교육과정)		44 (10.1)
	2학년 (임상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69 (15.9)
	3, 4학년 (원내 임상실습과정)		236 (54.3)
	국가고시 응시 전		32 ( 7.4)
	국가고시 응시 후 - 졸업 전		42 ( 9.7)
	졸업 후		12 ( 2.8)

표 7.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 (상세)

학교	학년	과목명
경희대학교	1학년	치과 의사의 사회적 의무 치과 예방학
	2학년	공중구강보건학
	3학년	의료전달체계와 대화술
	4학년	의료관련법규
연세대학교	2학년	예방치과학
	3학년	치과 의료 발전의 비판적 이해
서울대학교	2학년	치과 생체 재료학 총의치학
	3학년	임상치의학입문 영상영상치의학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4학년	영상치의학입상실습

## 4. 고 안

구강 내 질환이나 치아의 통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구강건강의 증진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우선되고 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적극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자 자신의 습관 변화와 개선을 위한 협조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구강관리 교육을 넘어 환자의 가치관까지 바꾸기 위해선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sup>15)</sup>.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보건인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임상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하고<sup>16)</sup>, 법적 가능 업무 등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sup>17)</sup>. 3년제 54개교, 4년제 28개교에 이르는 국내 치위생학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단계적인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한 교과과정의 표준화를 추진해나가는 중이다<sup>18)</sup>.

그러나 유 등<sup>19)</su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 치과위생사들은 진료 상담 등의 환자 응대 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근무지 내 상사와의 갈등이나 급여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치과위생사들의 모호한 업무 권한과 영역으로 인해 다른 진료인력과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법적 문제로 인한 행정적 처분까지 받기도 한다<sup>13)</sup>.

치과위생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낮은 편이다. 예방 위주의 진료와 구강보건교육에 집중하는 선진국의 치과위생사와 달리,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들은 진료를 보조하거나 법정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sup>5)</sup>.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보조적, 여성적이며, 희생하는 치과간호사처럼 떠올리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sup>6)</sup>.

우려되는 점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해 환자들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치과위생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sup>20)</sup>, 치과위생사협회가 주장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 요구는 그 노력의 일환이다<sup>21)</sup>.

치과위생사 개인과 단체의 노력으로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치과진료를 수행할 치과의사들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간호조무사와 다른 진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만 가능한 업무를 의도치 않게 위임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시행은 각 직군별 업무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증거이다.

이번 연구에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각각 38.2%와 28.4%에 불과했으며, 알게 된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가 30.3%로 가장 많았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답한 응답자는 69.2%에 달했는데, 이 중 의료계 관련 종사자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72.4%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학교 교육과정 외의 경로를 통해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치의학과 특성상, 경험적 인지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표 2와 3에서 학년에 따른 응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에 대한 무지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인원이 42.7%로 가장 높았고, 관심 없음이 31.5%로 다음을 차지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무지에 대해선 관심 없음이 38.6%로 가장 높았고, 관련 교육과정의 부재가 33.8%로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치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내용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행위 분류표의 전체 정답률은 65.8%였고, 치과위생사 항목은 74.3%, 간호조무사 항목은 57.7%였다. 응답자들은 치과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더 무지한 경향을 보였다. 정답률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교육과정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임상적 경험에 의한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행위별로 정답률의 차이가 극명히 나뉘었는데,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대해선 대부분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임시충전(36.7%), 임시부착물

장착과 제거(42.3%), 교정용 결찰용 호선 제작(41.2%),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38.2%), 치면열구전색(40.6%) 항목의 정답률은 낮았다. 이 항목들은 치과위생사가 시행 가능한 업무들이지만, 많은 응답자들은 치과의사만 시행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서도 항목별 정답률의 큰 격차가 관찰되었다. 그 중 suction assist(치석 등 침착물 제거(44.0%), 불소 도포(46.6%), 임시 충전(41.9%),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42.7%), 불소트레이 제거 및 재료 정리(42.1%), 임시부착물 접착용 시멘트 혼합(28.4%), 치아 본뜨기 트레이 시적(38.6%),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46.9%),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26.0%), 트레이 제거(21.9%), 교정용 결찰용 호선 제작(8.7%), 구강내 필름 고정시키기(32.1%), 방사선 사진 출력(현상) 및 저장(아날로그(26.7%), 디지털(32.3%)) 항목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행위 분류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간호조무사가 시행 가능한 다수의 행위들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치과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가능 영역이 작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결과로 보인다.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시행 불가능한 치석 등 침착물 제거(83.3%), 불소도포(79.2%), 치아본뜨기(82.6%), 구내방사선촬영(74.4%) 항목들의 정답률이 높았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치과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분되어야 할 주요 업무들이기 때문에, 치의학과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행위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은 교정용 결찰용 호선 제작 업무(24.9%)였다. 이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가능한 행위임에도 각각 41.2%, 8.7%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만 가능한 업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한다고 답한 13.7%가 적은 구체적인 과목명을 표 7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가능 업무가 다르고,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수준만 교수되었다. 그 중 경희대학교의 의료관련법규 수업에서 업무영역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다루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임상실

습에선 방사선촬영과 관련한 업무영역을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었다.

94.4%에 이르는 응답자가 관련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 54.3%가 3, 4학년(원내 임상실습과정) 때 개설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표 6).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직접 경험하는 원내 임상실습과정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 중 97.2%가 졸업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임상실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3, 4학년 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가능 여부 등을 교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치의학과 재학생들도 평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업과 실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상자의 범위가 서울지역의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표본의 수와 범위를 늘림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확대된 범위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해지므로, 새로운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외에도 현직에 있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도 고려될 수 있다.

행위 분류표 응답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성실도와 관련한 제한점도 있다. 60개에 달하는 항목에 O, X로 답해야 하므로, 응답자들의 무성의한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에는 쉽고 빠른 응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교육과정의 존재 유무와 과목명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내용을 다루는지 정량화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했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5. 결 론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의료 분야와 관련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이러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치과의사는 올바른 진료 서비스를 누리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해 진료인력들의 직업별 업무 가능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9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치과의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회수 후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461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 후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시행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적었으며, 그 이유를 홍보 부족, 관심 없음, 법에 대한 인식 부족 순으로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인지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 관련 교육과정, 일반 언론매체, 전문 언론매체 순이었다.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많은 응답자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 경로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 언론 등의 매체, 관련 교과과정 순이었으며, 무지 이유는 관심 없음, 관련 교육과정의 부재, 홍보 부족, 진료 현실과 동떨어짐 순이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 응답에서는 치과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 항목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정답률은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나, 관련 교육과정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적었으며,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응답



자가 3, 4학년 교육과정에 개설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 분류와 관련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 진료 통계: 다빈도 상병별 현황  
[Internet] {cited by Sep. 01, 2017} . Available from: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HthInsRvStatInfo.do?tNum=14>
2. 매일경제: 건보 확대로 우려했던 '의료쇼핑' 확산일로  
[Internet] {cited by Apr. 16, 2018} . Available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2767>
3. 치의신보: 11일부터 명찰 패용 고시 시행...1개월간 계도  
[Internet] {cited by Sep. 01, 2017} . Available from: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8410>
4. 한옥성, 정경이. 일부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영향요인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2017; 15(2): 385-392.
5. 남용옥, 유자혜. 일부 선진국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자격인증제도 및  
업무범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4; 14(4): 453-462.
6. 이미라, 지민경. 일부 대학생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5; 9(2): 211-218.
7. 박지현, 김문숙, 조자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치과의사의 인  
식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0; 34(1): 88-97.
8. 심수현, 황윤숙. 치과위생사의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2007; 7(2): 153-166.

9. 신선정, 손정희, 최용금, 류다영, 마득상. 치과위생사 인력추계와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치위생과학회지 2007; 7(1): 25-30.
10. 박소영, 원영순, 김정숙. 일부 치과 의사의 구강보건보조인력 활용과 업무에 관한 조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2; 6(4): 1-12.
11. 이숙정, 조혜연.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5; 6(4): 153-159.
12. 최유리, 서혜연, 류은주, 최은미. 일부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 법에 대한 인식. 치위생과학회지 2016; 16(6): 495-501.
13. 김영숙, 신민우. 치과위생사의 업무 실태 및 비중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08; 8(3): 161-175.
14. 데일리덴탈 -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행위분류 나왔다  
[Internet] {cited by Sep. 01. 2017} . Available from: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88821>
15. 권호근.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의 현실과 발전방향.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2; 40(12): 969-970.
16. 김웅권, 임순환 권미영, 최영운, 한지형.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직무현황 및 교육요구도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2014; 14(1): 35-42.
17. 장윤정. 치과위생사의 의료관련법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7; 17(2): 295-305.

18. 임미희, 류정숙, 이선미, 한지연, 원영순, 안세연. 치과위생사의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한 임상치위생교과목 학습목표 개발실태. 대한치과 의료관리학회지 2016; 4(1): 55-66.
19. 유은미, 한화진.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이직요인 연구. 치위생과 학회지 2011; 11(1): 41-46.
20. 장영은, 허선수, 김은경, 김남희. 보건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 수행 요구도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7; 17(3): 505-513.
21. 김선일, 전미경,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 에 대한 요구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6; 16(5): 677-6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행위 분류표

시행령 관련 업무	행위분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석 등 침착물 제거	1. 장비 소독 및 기구준비	○	○	○
	2. suction assist	○	○	○
	3. 치석 등 침착물 제거	○	○	×
불소 도포	1. 시행 장비 및 재료 준비	○	○	○
	2. suction assist	○	○	○
	3. 불소도포	○	○	×
	4. 불소트레이 제거 및 재료 정리	○	○	○
임시충전	1. 재료 및 기구준비	○	○	○
	2. suction assist	○	○	○
	3. 임시충전	○	○	×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1. 임시부착물 및 기구 준비	○	○	○
	2. 접착용 시멘트 혼합 (장착 시)	○	○	○
	3.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	○	×
치아본뜨기	1. 트레이 시적	○	○	○
	2.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	○	○
	3. 치아본뜨기	○	○	×
	4.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	○	○
	5. 트레이 제거	○	○	○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1. 장비 및 재료 준비	○	○	○
	2. suction assist	○	○	○
	3. 결찰용 호선 제작	○	○	○
	4.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	○	×
구내방사선촬영 업무	1. 환자 자세 및 설명	○	○	○
	2. 구강 내 필름 고정시키기	○	○	○
	3. 구내방사선촬영	○	○	×
	4. 아날로그 방사선 사진 현상·정착	○	○	○
	5. 디지털 방사선 사진 출력·저장	○	○	○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1. 장비 및 재료 준비	○	○	○
	2. suction assist	○	○	○
	3. 치면열구전색 등 시행	○	○	×

\*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지도도 포함

##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의료인 명찰폐용법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어떤 직종인지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직종이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올바른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추세와는 다르게,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이 서로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직무의 고유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해 의료법에 기초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영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의 교육과정 포함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교육내용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나이    만 \_\_\_\_\_세

· 성별

① 남                    ② 여

· 학교

① 경희                ② 연세                ③ 서울

·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 출신

① 치의예과    ② 학사졸업

1. 2017년 5월 11일부터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  
(이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2.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네(2-1.로 이동)                          ② 아니오(2-2.로 이동)

2-1.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① TV, 신문 등 일반 언론매체  
② 의료계 관련 전문 언론매체  
③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④ 의료계 관련 종사자  
⑤ 기타 : \_\_\_\_\_

2-2.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홍보 부족  
② 관심 없음  
③ 법에 대한 인식 부족  
④ 기타 : \_\_\_\_\_

3.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네(3-1.로 이동)                          ② 아니오(3-2.로 이동)

3-1.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② 정규 교육과정 외 학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③ 의료계 관련 종사자  
④ 언론 등의 매체  
⑤ 기타 : \_\_\_\_\_

3-2. 모르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홍보 부족  
② 관심 없음  
③ 관련 교육과정의 부재  
④ 진료 현실과 동떨어짐  
⑤ 기타 : \_\_\_\_\_

4.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를 회색 칸에 ○, ×로 기입하시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행위 분류표(보건복지부)

시행령 관련 업무	행위분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석 등 침착물 제거	1. 장비 소독 및 기구준비	○		
	2. suction assist	○		
	3. 치석 등 침착물 제거	○		
불소 도포	1. 시행 장비 및 재료 준비	○		
	2. suction assist	○		
	3. 불소도포	○		
	4. 불소트레이 제거 및 재료 정리	○		
임시충전	1. 재료 및 기구준비	○		
	2. suction assist	○		
	3. 임시충전	○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1. 임시부착물 및 기구 준비	○		
	2. 접착용 시멘트 혼합 (장착 시)	○		
	3.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		
치아본뜨기	1. 트레이 시적	○		
	2.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		
	3. 치아본뜨기	○		
	4.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		
	5. 트레이 제거	○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1. 장비 및 재료 준비	○		
	2. suction assist	○		
	3. 결찰용 호선 제작	○		
	4.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		
구내방사선촬영 업무	1. 환자 자세 및 설명	○		
	2. 구강 내 필름 고정시키기	○		
	3. 구내방사선촬영	○		
	4. 아날로그 방사선 사진 현상정착	○		
	5. 디지털 방사선 사진 출력·저장	○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1. 장비 및 재료 준비	○		
	2. suction assist	○		
	3. 치면열구전색 등 시행	○		

\*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지도 포함



5. 현재 재학 중인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교육과정(수업, 임상실습 등)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해당 과목명을 적어주세요.

- ① 네 (과목명 : \_\_\_\_\_)
- ② 아니오

6.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수업, 임상실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네(6-1.로 이동)      ② 아니오(6-2.로 이동)

6-1. 해당 교육과정은 어느 시기에 개설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학년 (이론수업 위주의 교육과정)
- ② 2학년 (임상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 ③ 3, 4학년 (원내 임상실습과정)
- ④ 원내 임상실습과정 종료 후 - 국가고시 응시 전
- ⑤ 국가고시 응시 후 - 졸업 전
- ⑥ 졸업 후

6-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수업, 임상실습 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술형)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1. Purpose

A dentist should be fully understanding the scopes of work of the dental health care personnel, and be able to accurately explain them to the patients.

If a dentist properly knows the legal work scopes of dental hygienists (DH) and chair-side dental assistants (DA)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and thereby is able to instruct them accordingly, he or she can not only meet the patients' wants to know, but also provide satisfactory dental treatment servic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dental colleges/schools in Seoul, of the work scopes of DH and DA.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for the subject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legal work scopes of the dental health care personnel. As a result, the subjects can develop appropriate capacities to provide high-quality dental services and treatments as prospective dentists.

## 2. Method

A direc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f about 950 students who currently attend dental colleges/schools in Seoul. The survey was taken between the 1st of January and 31st of March, year 2018, and we were able to use a total of 461 samples for final analysis after excluding inappropriate ones.

The contents of this structuralized survey included the obligation of proper name badge use for dental health care personnel, the legal

work scopes of DH and DA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execution of the 'Legal Acts on Medical Technicians', and the in/exclusion of such contents from dental colleges/schools curricula. The results were digitally input and statistically analyzed via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

### **3. Results**

Many subjects were aware of the different work scopes of DH and DA, but not their legal obligation to wear appropriate name badges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me Badge Standards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Also, the students answered to had acquired such information through oral health care professionals, school curricula, general/specialized media, in their according order.

The subjects generally showed higher comprehension of the work scopes of DH than those of DA, especially showing low correction rates in DA's following work scopes: mixing temporary dental cements; trially adapting impression trays; preparing the mixing of impression materials; retaining and removing impression trays after initial setting; making orthodontic ligature wires; holding intraoral radiographic films; and saving and printing analogue and/or digital radiographs.

Accurate responses tended to increase with the students' seniority, however this was found to be irrelevant with the existence of corresponding curriculum.

Most students agreed with the need of a class teaching the work scopes of DH and DA to be included in their school curricula. Many responded that such class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be taught in the third and fourth years during which the students engage in clinical training and practice in actual dental hospitals.

Keywords : dental hygienist, chair-side dental assistant, working  
scope, dental student

Student Number : 2014-23007